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인사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국가보훈처의 일부 정원을 복수직렬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5. 00. ~ 5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 중 행정주사 “27”을 “25”로 하고, 행정주사 25 다음에 “행정주사 또는 별정직 6급 상당(비서) 2”를 신설한다.

별표 3의2 중 행정주사 “27”을 “25”로 하고, 행정주사 25 다음에 “행정주사 또는 별정직 6급 상당(비서) 2”를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정원 대비 표

[별표 3]

국가보훈처 공무원 정원표(제20조제1항 본문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 정 안	증 감
·	·	·	
·	·	·	
행정주사	<u>27</u>	<u>25</u>	-2
<u>행정주사 또는 별정직 6급</u>	<u><신 설></u>	<u>2</u>	+2
<u>상당(비서)</u>			
·	·	·	
·	·	·	

[별표 3의2]

국가보훈처 공무원 정원표(제20조제1항 단서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·	·	·	
·	·	·	
행정주사	<u>27</u>	<u>25</u>	-2
<u>행정주사 또는 별정직 6급</u>	<u><신 설></u>	<u>2</u>	+2
<u>상당(비서)</u>			
·	·	·	
·	·	·	